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전거등을 이용한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등〉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84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09. 25.
3. 회부연월일 : 2024. 0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무인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폭주 집회’ 예고에 경찰관 수백명이 동원되었고, 여러대의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등이 보행자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며 위협하고 단속 경찰관을 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자전거등의 경우에도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도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전거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1항 및 제156조제14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전거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 ⑩ (생략) <u><신설></u>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 ⑩ (현행과 같음) <u>⑪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전거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13. (생략)	제156조(벌칙) ----- ----- ----- -----. 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14. 제50조제1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자전거등 을 운전한 사람
--------------------	---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함¹⁾. 최근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폭주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전거등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타인의 생명·신체에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자동차등과 달리 속도와 무게 측면에서 위험성이 낮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인력으로 운행되는 자전거의 경우 두 대 이상의 자전거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나란히 운행한다고 하여 교통안전상 큰 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²⁾.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1.(생략)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1의3. ~ 33, (생략)

2)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로 경찰청은 자전거는 동력원이 인력이고 운전면허도 요하지 않는 등 위험성이 더 낮으므로 교통안전에 끼치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5